

영등포구보

입법예고

- 제2011-75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 제2011-75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고 시

- 제2011-60호 도림16구역 주택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고시 7
- 제2011-61호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9

공 고

- 제2011-742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10

인사발령

- 2011. 8. 23 일자 18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홈페이지<<http://www.ydp.go.kr>>(내사랑영등포→영등포행정→영등포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02)2670-7554 / 전송 : (02)2670-3581)
- ◎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
- ◎ 구보게재접수는 D-3일(월요일)까지 접수

D-3접수

→

D-2일
편집 및 교정

→

D-1일
인쇄 및 제책

→

D일
보급 및 배포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11-75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공단 명칭이 길어, 표기 및 호명에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고객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공단 명칭 변경
 - 현 행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 변 경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시설공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당산동3가 385-1)
영등포구청 기획예산과 (☎ 2670-7533, FAX 2670-3579)

붙 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단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시설공단”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단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업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시설공단----- ----- ----- -----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11-75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I. 개정이유

- 2011. 6. 27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

II.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의 법정 적립액 의무예치율 개정(안 제5조제1항)
 - 매년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의 용도관련 개정(안 제6조제1호 및 제2호)
 -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 <시행령 제74조제1호>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
 -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재난 예보, 경보시설 설치로 한정) 및 보수 보강
 - ▷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시행령 제74조제2호>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

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 위원회 민간인 위촉 위원의 연임기간을 1회로 제한(안 제7조제6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회의 및 수당지급 사항 보완(안 제8조제4항)
 - 공무원인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
- 2011년 현재 치수방재과 팀 명칭에 맞도록 간사 및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 수정(안 제9조제1항 및 안 제10조제2호)
 - 재난관리담당주사 → 재난예방담당주사

Ⅲ.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치수방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당산동3가 385-1)본관5층 영등포구청 치수방재과(☎ 02-2670-3867, fax : 02-2670-3638)

따로붙임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15”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서”를 “영 제74조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6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4항에 “다만, 공무원인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 를 신설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2호 중 “재난관리담당주사”를 “재난예방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 적립액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 ----- -----100분의 15-----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 2.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 3. ~ 9. (생략)</p>	<p>제6조(기금의 용도) ----- -----.</p> <p>1. 영 제74조에서----- 2. (삭제) 3. ~ 9. (현행과 같음)</p>
<p>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⑤ (생략) ⑥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p>	<p>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 -----.</p>
<p>제8조(회의 및 수당)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 출석위원 또는 소관 사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신설></p>	<p>제8조(회의 및 수당)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p> <p>다만, 공무원인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p>
<p>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② (생략)</p>	<p>제9조(간사 등) ①----- -재난예방담당주사를----- 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p> <p>1. (생략)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담당주사</p>	<p>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 ----- -----.</p> <p>1. (현행과 같음) 2. 기금출납원 - 재난예방담당주사</p>

고 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2011-60호

도림16구역 주택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51호(2007.07.26)로 정비구역지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영등포구고시 제2008-71(2008.12.11)사업시행인가, 영등포구고시 제2009-76(2009.12.30) 관리처분 계획인가, 영등포구고시 제2009-602호(2009.06.08), 영등포구고시 제2011-27(2011.4.14)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영등포구고시 제2011-31(2011.4.23)사업시행변경인가, 영등포구고시 제2011-41(2011.6.15)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지정 고시된 도림제16구역주택재개발사업 사업 시행자인 도림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고) 신청이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동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림제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 위치 및 면적 :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162-94번지 일대(53,378㎡)
- 3. 사업시행자 : 도림제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주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50-5호 4층)
-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9년 12월 30일
-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건축계획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계	지상	지하		
5,812.694	137,005.281	91,113.343	45,891.938	16.02%	249.37%

2) 토지이용계획

계(㎡)	분양대지(㎡)			정비기반시설(㎡)			
	분양 및 임대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포함)	종교용지	소계	도로	공원	녹지	소계
53,378	36,366	10,255	46,621	2,937	1,857	1,963	6,757

나. 권리자별 관리처분

대상자	분 양				청산	수용	협의매수
	소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주택 및 상가			
422인	397인	391인	2인	4인	23인	1인	1인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포함)

구분	용도폐지		신설			
	계	도로	계	도로	공원	녹지
규모(㎡)	5,349	5,349	6,757	2,937	1,857	1,963

라.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													근린생활시설 (㎡)	
	계	36.437	40.056	51.012	59.999	84.974	84.854	84.762	84.781	84.764	84.738	120.038	143.591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
계	836	60	60	27	56	180	108	56	56	58	61	56	58	609. 818	1,633.07 9
조합원	395				39	108	64	32	34	34	37	28	19		
세입자 (임대)	147	60	60	27											
보류시설	4				2					2					
일반분양	290				15	72	44	24	22	22	24	28	39		

마. 기존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 2011년 6월 기철거 되어 해당사항 없음

6.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영등포구청 주택과 (02-2670-3660)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2011-61호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아 래 -

대상시설			지정 사유	지정 등급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명	소재지	소유자 (점유자·관리자)				
일반건축물 (주택)	영등포구 신길동3261 번지	정 혜 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관리	E급	-월2회이상 안전점검 -안전관리자 지정 등 안전관리 강화 -위험요인해소를 위한 장·단기 해소계획 수립 추진	

공 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11-742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 1. 영등포구 고시 제2009-73호('2009.12.31)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되고 지적고시된 『양평동 불량주택 밀집지역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푸른도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의견 제출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바랍니다.

2011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조서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시행지	사업규모	사업기간	비 고
양평동 불량주택 밀집지역 공원화	영등포구 양평동2가 41-5 ~ 41-91	1,109.5㎡	인가일로 부터 3년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 영등포구 고시 제2009-73호('2009.12.31)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3)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장

4) 사용 및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5)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주소·성명 : 붙임

나. 문의처 : 영등포구청 푸른도시과(☎ 2670-3757)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번지 영등포구청장

사 업 의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사 업 시 행 위 치 : 양평동 불량주택 밀집지역 공원화

연번	소재지	지목	실제 이용 현황	공부상 면 적 (㎡)	편입 면적 (㎡)	지 분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종류및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1	양평동2가 41-9	대	주택	20.8	20.8		영등포구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2	양평동2가 41-11	대	주택	7.8	7.8		영등포구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3	양평동2가 41-28	대	녹지대	13.2	13.2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4	양평동2가 41-29	대	녹지대	13.5	13.5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5	양평동2가 41-30	대	녹지대	12.7	12.7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6	양평동2가 41-31	대	녹지대	12.2	12.2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7	양평동2가 41-32	대	녹지대	13.9	13.9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8	양평동2가 41-34	대	주택	1	1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9	양평동2가 41-35	대	주택	11.2	11.2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10	양평동2가 41-37	대	주택	2.8	2.8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11	양평동2가 41-5	대	공장	215.1	215.1		박찬분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38-17	근저당권	중소 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	

연번	소재지	지목	실제 이용 현황	공부상 면 적 (㎡)	편입 면적 (㎡)	지 분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종류및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12	양평동2가 41-10	대	주택	18.5	18.5		이기봉	서울특별시 양평동2가 41-10	근저당권	안노미	서울시 강서구 화동동 930-5 금축연립 206	
13	양평동2가 41-12	대	주택	12.2	12.2		심재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7 분당두산위브파빌리온 B동 1024호				
14	양평동2가 41-13	대	주택	22.5	22.5		노옥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32 문촌마을 305동 1501호				
15	양평동2가 41-14	대	주택	39	39		오용택	서울특별시 양평동2가 41-14				
16	양평동2가 41-15	대	주택	34	34		석순용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동 24				
17	양평동2가 41-16	대	주택	28.1	28.1		장경애	서울특별시 양평동2가 41-16				
18	양평동2가 41-17	대	주택	40.3	40.3		김선화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38-1 삼성이파트 105동 802호				
19	양평동2가 41-18	대	주택	16.5	16.5		안상근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41-18				
20	양평동2가 41-19	대	주택	22.1	22.1		오용석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19 양평역월드메르디앙 102동 204호				
21	양평동2가 41-20	대	주택	14.9	14.9		오용석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19 양평역월드메르디앙 102동 204호				
22	양평동2가 41-21	대	주택	16.2	16.2		오인식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양평역월드메르디앙 102동 204호				
23	양평동2가 41-22	대	주택	33.7	33.7		도정국	영등포구 당산동2가 15-1 문래역대우 미래사랑 3차 101-1402	가압류	(주)삼포 통상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40-2	
24	양평동2가 41-23	대	주택	86.9	86.9		장락우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48-55 동양2차아파트 209동 1004호				

연번	소재지	지목	실제 이용 현황	공부상 면 적 (㎡)	편입 면적 (㎡)	지 분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종류및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25	양평동2가 41-25	대	주택	63.5	63.5		김익중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273-1 금호 어울림 아파트 201동 504호				
26	양평동2가 41-26	대	주택	14.2	14.2		정규두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41-26				
27	양평동2가 41-27	대	주택	8.2	8.2		정규두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41-26				
28	양평동2가 41-33	대	주택	21.1	21.1		신현경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41-33	압류	영등포구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29	양평동2가 41-36	대	주택	7.2	7.2		정이부	영등포구 양평동2가 41-36				
30	양평동2가 41-60	대	주택	383.1	206.8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22				
31	양평동2가 41-62	대	주택	76.4	76.4		오용석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19 양평역월드메르디앙 102동 204호				
32	양평동2가 41-91	대	주택	3	3		정규두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41-26				

물 건 조 서

사업시행자의 주소및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번지 영등포구청장
 사 업 의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사 업 시 행 위 처 : 양평동 불량주택 밀집지역 공원화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 량 (면적:m ²)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종류및내용			비 고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1	양평동 2가 41-5	창고	철근 콘크리트조	62.84	박찬분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17-15	근저당권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	
2	양평동2가 41-10	주택	블록조	11.44	이기봉	서울특별시 양평동2가 41-10				
3	양평동2가 41-12	주택	목조	12.23	이정수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7-53 3층				무허가 대장
4	양평동2가 41-13	주택	블록조	17.01	최준영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31 주공연립 137-202				
5	양평동2가 41-13	주택	목조	22.47	김태환	서울 강동구 천호동 362-25 광진빌라 301호				무허가 대장
6	양평동2가 41-14	주택	목조	39	오용택	서울특별시 양평동2가 41-14				무허가 대장
7	양평동2가 41-15	주택	블록조	25.8	석순용	전라남도 여주시 남산동 24				
8	양평동2가 41-16	주택	블록조	22.08	장경애	서울특별시 양평동2가 41-16				
9	양평동2가 41-17	주택	블록조	32.76	김선화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38-1 삼성아파트 105동 802호				
10	양평동2가 41-18	주택	목조	16.52	안상근	서울시 양평동2가 41-18				무허가 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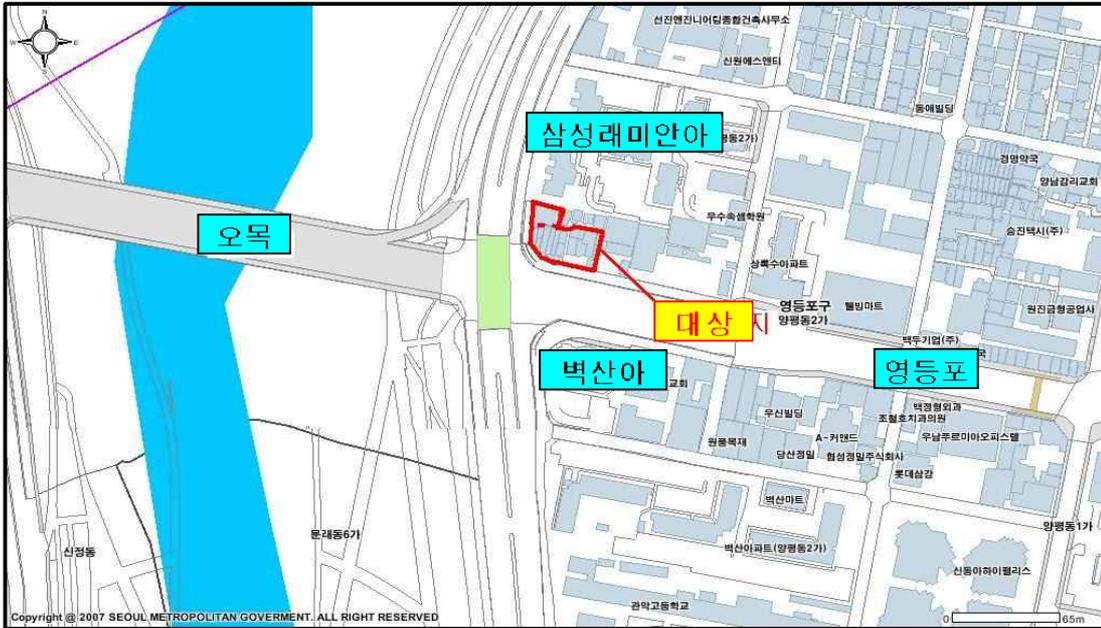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 량 (면적:m ²)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종류및내용			비 고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11	양평동2가 41-19	주택	블록조	15.36	이점례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460 한강아파트 103-602				
12	양평동2가 41-20	주택	목조	12.24	이준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37-9				
13	양평동2가 41-21	주택	목조	13.23	오인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양평역월드메르디앙 102동 204호				
14	양평동2가 41-22	주택	블록조	19.95	도정국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15-1 문래역대우미래사랑3차 101-1402				
15	양평동2가 41-23	근린 생활시설	목조	21	장락우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48-55 동양2차 아파트 209동 1004호				
		근린 생활시설	목조	37.75	장락우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48-55 동양2차 아파트 209동 1004호				
16	양평동2가 41-25	주택	블록조	41.04	김지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02-236				
17	양평동2가 41-26	주택	목조	12.95	정규두	서울특별시 양평동2가 41-26				
18	양평동2가 41-33	주택	블록조	19.36	민정식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 18-1 코아루햇빛마을아파트 104-102				
19	양평동2가 41-35	주택	블록조	24.13	이광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51-5				무허가 대장
20	양평동2가 41-62	주택,점포	블록조	주택(35.75) + 점포(8.4) = 44.15	김창수	서울특별시 양평동2가 41-62				

영 업 권 조 서

사업시행자의 주소및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번지 영등포구청장
 사 업 의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사 업 시 행 위 처 : 양평동 불량주택 밀집지역 공원화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 류	상 호 명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종류및내용			비 고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1	양평동2가 41-5	영업권	경진금속	박찬본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38-17					
2	양평동2가 41-5	영업권	동원발전기	노성철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104-63 202호					
3	양평동2가 41-5	영업권	일진유압	정인우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31-1 현대프라임아파트 2-2104호					
4	양평동2가 41-23	영업권	알트리	이원달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650-1 원당아파트 601호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인사발령

일반직공무원 인사발령(육아휴직 연장)

<발령번호 : 제128호>

일련 번호	성 명	제 청			현 직		
		부 서	직위(호봉)	직 급	부서	직위	직 급
1	조 아 미 (77.08.1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11.08.23부터 2012.08.22까지)			행정국		지방행정 서 기

(발령연월일 : 2011년 08월 23일자)